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입주자모집공고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 사항

-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www.gd-sclass.co.kr)으로 운영예정이니 관람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gd-sclass.co.kr)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당첨자 견본주택운영관련 안내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당첨자 발표 이후 서류 접수는 등기접수로 진행합니다. (방문접수는 불가합니다.)
2. 견본주택 사전 예약자가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 증명서 및 여권 확인 예정).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최근 1개월 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등 견본주택 내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할 예정입니다.

■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 상담전화(1544-6177)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 및 관련법규, 관련 서류 등을 발급 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28 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강동구)은 「주택법」제63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제25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주택법 시행규칙」제25조3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하(무주택 및 1주택 소유자) 세대주만 1순위 청약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 현재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 2년 이상(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모두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565호 부칙 제3조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의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gd-sclass.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공급 질서 교란 행위자)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 제한, 예비입주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 제한

- 특별공급 주택 :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 및 동법별표3제5호에 의거 최초로 주택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일반공급 주택 :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거 최초로 주택 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59㎡, 84A(1)㎡, 102㎡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홍보물과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 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당해)	일반1순위(기타)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2020.08.10.(월)	2020.08.11.(화)	2020.08.12.(수)	2020.08.13.(목)	2020.08.19.(수)	2020.08.31.(월) ~ 2020.09.04(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 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7860호(2020.07.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200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최저5층, 지상최고40층 4개동 총 아파트 999세대(임대주택 117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6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95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22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22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46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5세대 포함)]

[단위 : 세대]

주택형	25	47A	47B	50	59	84A	84B	98	102	114	135P	136P	137P	138AP	138BP	138CP	계
총세대수	2	138	100	35	200	272	103	37	70	33	1	1	1	3	2	1	999
일반	1	84	51	15	89	181	79	36	63	26	0	1	0	0	0	0	626
조합	1	4	0	2	109	88	24	1	7	7	1	0	1	1	1	0	247
임대	0	50	49	18	0	0	0	0	0	0	0	0	0	0	0	0	117
보류지	0	0	0	0	2	3	0	0	0	0	0	0	0	2	1	1	9

■ **입주시기** : 2024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	주차장 면적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소계		
민영 주택	2020000852	01	25.9823	25	25.9823	16.0477	42.0300	2.1373	21.3492	65.5165	6.5564	1	-	-	-	-	-	1	1
		02	47.8419A	47A	47.8419	29.0271	76.8690	3.9356	30.7849	111.5895	12.0725	84	8	8	16	2	34	50	2
		03	47.4496B	47B	47.4496	29.2159	76.6655	3.9033	30.5325	111.1013	11.9735	51	5	5	10	1	21	30	1
		04	50.4856	50	50.4856	30.8669	81.3525	4.1531	32.4861	117.9917	12.7396	15	1	1	3	-	5	10	-
		05	59.9751	59	59.9751	22.1264	82.1015	4.9337	38.5923	125.6275	15.1342	89	8	8	17	2	35	54	6
		06	84.1946A	84A	84.1946	29.5466	113.7412	6.9262	47.9309	168.5983	21.2458	181	-	-	-	-	-	181	8
		07	84.2711B	84B	84.2711	30.8909	115.1620	6.9325	47.9744	170.0689	21.2651	79	-	-	-	-	-	79	3
		08	98.4933	98	98.4933	36.2463	134.7396	8.1025	64.7096	207.5517	24.8540	36	-	-	-	-	-	36	1
		09	102.9452	102	102.9452	35.7567	138.7019	8.4688	67.6345	214.8052	25.9774	63	-	-	-	-	-	63	2
		10	114.8148	114	114.8148	38.7579	153.5727	9.4451	75.4328	238.4506	28.9726	26	-	-	-	-	-	26	1
		11	136.8580P	136P	136.8580	48.8903	185.7483	11.2585	89.9151	286.9219	34.5350	1	-	-	-	-	-	1	-
		12	135.0731P	135P	135.0731	49.5697	184.6428	11.1118	88.7424	284.4970	34.0846	-	-	-	-	-	-	-	-
		13	137.4868P	137P	137.4868	51.4581	188.9449	11.3103	90.3282	290.5834	34.6937	-	-	-	-	-	-	-	-
		14	138.7020A	138AP	138.7020	51.9814	190.6834	11.4102	91.1266	293.2202	35.0003	-	-	-	-	-	-	-	-
		15	138.7875B	138BP	138.7875	49.6069	188.3944	11.4172	91.1827	290.9943	35.0219	-	-	-	-	-	-	-	-
		16	138.8389C	138CP	138.8389	49.6623	188.5012	11.4215	91.2165	291.1392	35.0349	-	-	-	-	-	-	-	-
	합 계											626	22	22	46	5	95	531	25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다록/홍보 제작물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대하여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84A타입으로 청약 가능하며, 84A1 / 84A2 타입의 선택은 불가함. 당첨 동호수에 따라 84A1 / 84A2 타입으로 구분 됨.

※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부대복리, 기계/전기/방재실 면적의 합계임.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구분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계약시	2021-02-15	2021-09-15	2022-04-15	2022-11-15	2023-05-15	2023-11-15	입주지정일
025.9823	25	1	104동5호	6~10층	1	195,962,500	109,037,500	305,0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30,500,000	91,500,000
047.8419A	47A	70	104동2호 104동3호	6~10층	10	361,085,000	200,915,000	562,0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56,200,000	168,600,000
				11~20층	20	364,940,000	203,060,000	568,0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56,800,000	170,400,000
				21~30층	20	368,152,500	204,847,500	573,0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171,900,000
				31~40층	20	372,007,500	206,992,500	579,0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57,900,000	173,700,000
		14	104동6호,104동7호	31~40층	14	368,152,500	204,847,500	573,0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57,300,000	171,900,000
047.4496B	47B	34	104동4호	6~10층	5	360,442,500	200,557,500	561,0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56,100,000	168,300,000
				11~20층	10	363,655,000	202,345,000	566,0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56,600,000	169,800,000
				21~30층	9	367,510,000	204,490,000	572,0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171,600,000
				31~40층	10	371,365,000	206,635,000	578,0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57,800,000	173,400,000
		17	104동5호,104동8호	31~40층	17	367,510,000	204,490,000	572,0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57,200,000	171,600,000
050.4856	50	15	104동1호	21~30층	7	389,997,500	217,002,500	607,0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182,100,000
				31~40층	8	393,852,500	219,147,500	613,0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183,900,000
059.9751	59	89	101동6호,101동7호 102동6호,102동7호 103동6호,103동7호	3~5층	18	462,600,000	257,400,000	720,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216,000,000
				6~10층	30	477,377,500	265,622,500	743,0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74,300,000	222,900,000
				11~20층	41	481,875,000	268,125,000	750,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75,000,000	225,000,000
084.1946A	84A	123	101동3호 102동3호 103동1호 103동2호 103동3호	3~5층	15	594,312,500	330,687,500	925,0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92,500,000	277,500,000
				6~10층	25	612,945,000	341,055,000	954,0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286,200,000
				11~20층	47	619,370,000	344,630,000	964,0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289,200,000
				21~30층	30	625,795,000	348,205,000	974,000,000	97,400,000	97,400,000	97,400,000	97,400,000	97,400,000	97,400,000	97,400,000	292,200,000
				31~40층	6	631,577,500	351,422,500	983,000,000	98,300,000	98,300,000	98,300,000	98,300,000	98,300,000	98,300,000	98,300,000	294,900,000
		58	101동5호 102동5호 103동5호	3~5층	9	588,530,000	327,470,000	916,000,000	91,600,000	91,600,000	91,600,000	91,600,000	91,600,000	91,600,000	91,600,000	274,800,000
				6~10층	15	607,162,500	337,837,500	945,0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94,500,000	283,500,000
				11~20층	26	612,945,000	341,055,000	954,0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95,400,000	286,200,000
				21~30층	8	619,370,000	344,630,000	964,0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96,400,000	289,200,000
084.2711B	84B	79	101동4호 102동4호 103동4호	3~5층	9	596,240,000	331,760,000	928,0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92,800,000	278,400,000
				6~10층	15	614,872,500	342,127,500	957,0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95,700,000	287,100,000
				11~20층	30	620,655,000	345,345,000	966,0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96,600,000	289,800,000
				21~30층	24	627,080,000	348,920,000	976,0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97,600,000	292,800,000
				31~40층	1	633,505,000	352,495,000	986,0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98,600,000	295,800,000

098.4933	98	36	102동1호	3~5층	3	675,910,000	376,090,000	1,052,000,000	105,200,000	105,200,000	105,200,000	105,200,000	105,200,000	105,200,000	105,200,000	315,600,000	
				6~10층	5	697,112,500	387,887,500	1,085,0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108,500,000	325,500,000	
				11~20층	10	704,180,000	391,820,000	1,096,0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109,600,000	328,800,000	
				21~30층	10	711,247,500	395,752,500	1,107,000,000	110,700,000	110,700,000	110,700,000	110,700,000	110,700,000	110,700,000	110,700,000	332,100,000	
				31~40층	8	718,315,000	399,685,000	1,118,0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111,800,000	335,400,000	
102.9452	102	63	101동2호 102동2호	3~5층	6	682,335,000	379,665,000	1,062,000,000	106,200,000	106,200,000	106,200,000	106,200,000	106,200,000	106,200,000	106,200,000	318,600,000	
				6~10층	10	703,537,500	391,462,500	1,095,000,000	109,500,000	109,500,000	109,500,000	109,500,000	109,500,000	109,500,000	109,500,000	328,500,000	
				11~20층	20	710,605,000	395,395,000	1,106,000,000	110,600,000	110,600,000	110,600,000	110,600,000	110,600,000	110,600,000	110,600,000	331,800,000	
				21~30층	20	717,672,500	399,327,500	1,117,0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335,100,000	
				31~40층	7	725,382,500	403,617,500	1,129,00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112,900,000	338,700,000	
114.8148	114	26	101동1호	3~5층	3	740,802,500	412,197,500	1,153,000,000	115,300,000	115,300,000	115,300,000	115,300,000	115,300,000	115,300,000	115,300,000	345,900,000	
				6~10층	5	763,932,500	425,067,500	1,189,000,000	118,900,000	118,900,000	118,900,000	118,900,000	118,900,000	118,900,000	118,900,000	356,700,000	
				11~20층	10	771,642,500	429,357,500	1,201,0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120,100,000	360,300,000	
				21~30층	8	779,352,500	433,647,500	1,213,000,000	121,300,000	121,300,000	121,300,000	121,300,000	121,300,000	121,300,000	121,300,000	363,900,000	
136.8580P	136P	1	103동1호	31~40층	1	1,072,975,000	597,025,000	1,670,000,000	167,000,000	167,000,000	167,000,000	167,000,000	167,000,000	167,000,000	167,000,000	501,000,000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자리에서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세대별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함.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분양가는 해당하는 실제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공급금액은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 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에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 시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 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 이전에 납부한 선납금액은 환불 불가)
-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선납 할인율은 공급 계약서 참고 요망)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 지정 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함(주민등록표 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 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 및 계약 체결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 발코니는 전 세대 비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확장형은 추가 선택품목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대금(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47A	47B	50	59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1	1	-	1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1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1	-	2	5
	장애인		2	1	-	2	5
	중소기업 근로자		2	1	-	2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거주자 (50%)		4	3	1	4	12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50%)		4	2	-	4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12	8	3	13	36
		일반공급(25%)	4	2	-	4	1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1	-	2	5
합 계			**34**	**21**	**5**	**35**	**9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2에 의거 투기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td><td>•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td></tr>
<tr><td>청약자격
요건</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
<tr><th>구 분</th><th>서울특별시</th><th>인천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
<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
<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
<tr><td>모든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
</table>
</td></tr>
<tr><td>재당첨
제한</td><td>•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아래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단, 향후「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td></tr>
</table>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22세대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추천기관 ①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②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③ 중소기업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④ 장애인 : (서울특별시)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22세대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서울시 2 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서울특별시 2년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자녀가구
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함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배점표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46세대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table>
<tr><td></td><td>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td><td></td></tr>
<tr><td>자격
요건</td><td>・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출생신고일 기준)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td><td>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 공급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제2순위 동일)
① 해당 주택건설 지역(서울특별시)에 2년이상 거주한자
② 미성년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와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td></tr>
<tr><td></td><td colspan="2">※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공급유형</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6">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th></tr>
<tr><th>3인 이하</th><th>4인</th><th>5인</th><th>6인</th><th>7인</th><th>8인</th></tr>
<tr><td rowspan="2">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5%)</td><td>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td><td>100% 이하</td><td>5,554,983원</td><td>6,226,342원</td><td>6,938,354원</td><td>7,594,083원</td><td>8,249,812원</td><td>8,905,541원</td></tr>
<tr><td>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td><td>120% 이하</td><td>6,665,980원</td><td>7,471,610원</td><td>8,326,025원</td><td>9,112,900원</td><td>9,899,774원</td><td>10,686,649원</td></tr>
<tr><td rowspan="2">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25%)</td><td>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td><td>100%초과~
120%이하</td><td>5,554,984원
~ 6,665,980원</td><td>6,226,343원
~ 7,471,610원</td><td>6,938,355원
~ 8,326,025원</td><td>7,594,084원
~ 9,112,900원</td><td>8,249,813원
~ 9,899,774원</td><td>8,905,542원
~ 10,686,649원</td></tr>
<tr><td>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td><td>120%초과~
130%이하</td><td>6,665,981원
~ 7,221,478원</td><td>7,471,611원
~ 8,094,245원</td><td>8,326,026원
~ 9,019,860원</td><td>9,112,901원
~ 9,872,308원</td><td>9,899,775원
~ 10,724,756원</td><td>10,686,650원
~ 11,577,203원</td></tr>
</table>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 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td></tr>
</table>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소득 입증 관련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근로 계약서 제출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본)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or 법인 등기부등본 ②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③ [국민연금미가입자]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③ 세무서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①,③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직인날인)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③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2019.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 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① 접수장소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 3]

1. 군복무중이여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의무 및 국민연금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함
3.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함
4.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할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5세대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자격요건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함.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 방문접수(견본주택)도 가능합니다.
- 입주선정 결과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시점에 동시 발표하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 처리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미적용)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등)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18.07.28 전부터 계속 거주)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및 외국인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은 해당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24개월)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청약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주택소유여부 및 부적격자 당첨명단 관리등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같은항 제7호가목 및 같은항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의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 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19조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 전 반드시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과거당첨사실 조회요망.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 당첨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하여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직장 포함)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1순위 자격제한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 • 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또는 연간 국외에 거주하는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청약시 가입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시 당첨자는 당사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 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 이하	• 주택공급신청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100%) ⑴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⑵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택공급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⑴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 ⑵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년이상) / 1순위기타 지역 서울특별시 (2년 미만)

			⑶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⑷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용 85㎡ 초과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가점제 50%, 추첨제 50%) 1) 가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점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를 우선 선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1분양권 등" 소유 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서약)불가합니다.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입주자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한 자 중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한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청약 제한대상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로 청약가능)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3.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 순 위	**전 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 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 불가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8호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20.0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만18세 이상 성년 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적격자 당첨명단 관리등 유의사항**

구분	신청자격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무허가 건물 : 종전 건축법(2006.5.8이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지역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등으로 확인)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이고,해당지자체의 무허가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으로 소명되어야 함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 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분양권등을 포함)이며,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에만 인정하고,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로 인정하기에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 모집공고 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09.01.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 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하되, 선순위 신청 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동일 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 다 우선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 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 :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한 자를 우선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단, "1분양권 등" 소유 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서약) 불가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 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 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 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추첨)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미방문 시 예 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예비입주자를 선정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20.08.10(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자)	2020.08.11.(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기타지역 (서울특별시 2년미만 / 인천, 경기거주자)	2020.08.12.(수) 08:00~17:30		
	2순위	수도권 거주자	2020.08.13.(목)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엡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고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당첨자 발표 및 서류검수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사전 서류 제출 일정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2020.08.19.(수)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기간 : 2020.08.20.(목) ~ 2020.08.28.(금) 7일간(당사 송달기준) - 방법 : 빠른 등기 우편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200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유지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미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됨.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당사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빠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 제출 방법은 방문 제출이 아닌 우편(등기)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특별공급 예비 당첨자 및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의 자격검증서류 제출 기한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해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8.19(수) ~ 2020.08.28(금) (10일간)
인터넷		-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8.19(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제출 서류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O	서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본인 및 본인의 세대에 속한사람 전원에 대하여 과거당첨내역, 주택소유여부 확인)
		O	1주택 실수요자 주택 처분 확약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추첨제)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기록대조일 : 출생일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O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기록대조일 : 출생일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요건을 구비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군복무 10년이상 명시)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업주체에게 일괄 명단 통보 시 별도 추천서 등 불필요(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O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O	기본증명서	자녀	자녀의 출생신고일 증명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었으나 관계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동일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경쟁 발생시), "상세"로 발급
		O	기본증명서	자녀	혼인기간 중 내 출생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또는 해당자)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O	재직 증명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O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O		소득증빙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 · 비속의 소득입증 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O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1년 이상) ,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부 공개 "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직계비속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로 발급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 로 발급
일반공급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 상세"로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1년 이상) ,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부 공개 " 상세"로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 상세"로 발급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 상세"로 발급
부적격 통보를		O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O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O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O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제출시 추가사항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O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아래 참조)

①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②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사업주체는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상기 서류 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VI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금액 계좌로 1차 계약금을 입금 후 정당계약일에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계 약 일 정	계 약 장 소
정당당첨자 계약체결	2020.08.31.(월) ~ 2020.09.04.(금), 5일간,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200번지 일원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이 해제 될 수도 있습니다.
- 공급계약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임의 분양함. 또한,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공급계약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 공급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당첨 제한됩니다.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① 사업주체는 동법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시	O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O	자격검증서류	본인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서류검수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O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O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해야 함(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가능)
	O		계약금 입금증	본인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내역증 (견본주택에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수납 일체 불가함)
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제출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출]
	O		위임장	계약자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2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신한은행	100-034-621130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 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601호 홍길동: 1026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납부 일자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 계좌 계약금 및 세대별 가상 계좌(중도금, 잔금)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사업장**입니다. 중도금대출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므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 미알선시에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자금을 조달하여 각회차별로 직접 기일내에 납부하며 이에 따라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스스로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신용대출 등의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

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 시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당 사업지가 투기지역으로 세대당 1건(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대출 알선 당시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간과 체결한 약정기간 및 이자납부 방법(계약자 본인 납부) 등의 중도금 대출 취급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금 대출 알선이 가능합니다.

Ⅶ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금액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2-15	입주지정일
25	5,100,000	510,000	510,000	4,080,000
47A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47B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50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59	10,100,000	1,010,000	1,010,000	8,080,000
84A	10,500,000	1,050,000	1,050,000	8,400,000
84B	11,800,000	1,180,000	1,180,000	9,440,000
98	11,100,000	1,110,000	1,110,000	8,880,000
102	16,300,000	1,630,000	1,630,000	13,040,000
114	13,400,000	1,340,000	1,340,000	10,720,000
136P	18,600,000	1,860,000	1,860,000	14,880,000

※ 발코니 확장공사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으로,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다른 공간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유상옵션 선택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신한은행	100-034-621238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201홍길동)

■ **유의사항**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에는 별도의 추가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에어컨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벽체의 돌출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결로 발생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분의 외부 샤시는 지역별 단열성능 확보제품으로 설치되며 창호 및 유리(원자재 브랜드, 제조사)는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별도 고지는 하지 않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공간의 크기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재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와 별도)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 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개별시공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단지는 임대와 분양아파트, 오피스텔이 혼합된 단지로써,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임대타입은 확장형으로 시공됨.

▣ **플러스 옵션**

■ 바닥재

(단위 : 원, VAT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2-15	입주지정일
25	490,000	49,000	49,000	392,000
47A	850,000	85,000	85,000	680,000
47B	830,000	83,000	83,000	664,000
50	910,000	91,000	91,000	728,000
59	1,280,000	128,000	128,000	1,024,000
84A	1,620,000	162,000	162,000	1,296,000
84B	1,580,000	158,000	158,000	1,264,000
98	1,810,000	181,000	181,000	1,448,000
102	1,940,000	194,000	194,000	1,552,000
114	1,940,000	194,000	194,000	1,552,000
136p	2,560,000	256,000	256,000	2,048,000

- 바닥재 선택시 LG지아마루로 시공되고, 미선택시 강마루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샘플을 확인 후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마루 색상이 상이함으로 표면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등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 상판+주방벽면**

(단위 : 원, VAT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2-15	입주지정일
47A	1,360,000	136,000	136,000	1,088,000
47B	1,360,000	136,000	136,000	1,088,000
50	1,360,000	136,000	136,000	1,088,000
59	1,360,000	136,000	136,000	1,088,000
84A	1,630,000	163,000	163,000	1,304,000
84B	1,460,000	146,000	146,000	1,168,000
98	1,520,000	152,000	152,000	1,216,000
102	1,750,000	175,000	175,000	1,400,000
114	1,510,000	151,000	151,000	1,208,000
136p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 옵션 선택시 엔지니어드스톤으로 시공되고, 미선택시 상판은 MMA 일반급, 벽은 타일로 시공될 예정이며 견본주택에서 샘플을 확인하시기 바람.

• 타입별 엔지니어드스톤 색상이 상이함으로 표면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등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현관 중문**

(단위 : 원, VAT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2-15	입주지정일
59, 84A, 84B, 98, 102,114,136p	현관 중문(여닫이/3연동)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 현관 중문은 타입별 사양이 다르므로, 해당 타입의 중문 형태를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현관 중문 미선택시 신발장의 크기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부욕실 비데일체형 양변기**

(단위 : 원, VAT포함)

구분(주거전용면적)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02-15	입주지정일
25, 47A, 47B, 50	비데일체형 양변기 (대림/DST-5000/1개소)	980,000	98,000	98,000	784,000
59, 84A, 84B, 98, 102	비데일체형 양변기 (대림/DST-5000/2개소)	1,960,000	196,000	196,000	1,568,000
114, 136P	비데일체형 양변기 (대림/DST-5000/3개소)	2,930,000	293,000	293,000	2,344,000

• 비데일체형 양변기 제품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비데일체형 양변기 일반 벽붙이 양변기로 시공됨 (일반 벽붙이 양변기는 일반 비데 설치가 불가하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공용욕실, 부부욕실등 설치부위 및 수량을 지정하여 선택 할 수 없음

■ **플러스 옵션 품목 납부 계좌**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국민은행**	**771301-01-801136**	**중흥토건 주식회사**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예시: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201홍길동)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랍니다.

■ **플러스옵션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플러스옵션의 납부방법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임.
- 플러스옵션의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플러스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플러스옵션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함.
- 플러스옵션의 설치 부위 및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람.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플러스옵션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하시기 바람.
- 플러스옵션은 발코니 확장세대에 한하여 선택 할 수 있음.
- 본 공고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Ⅷ 기타 계약자안내

■ 기타 유의사항
- 공동주택의 명칭은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

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설치 위치 및 개소 등은 본공사시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차·보도선형, 위치, 거리, 폭,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시 설계 후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Mock up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함.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광역도로 및 지하철 등 광역교통망 및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 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등에 따라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내 도로선형, 조경(수목,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 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 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됨.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대지면적과 용적률, 건폐율은 아래와 같음.

구분	전체면적 (대지지분)	공동주택면적(대지지분)	오피스텔면적(대지지분)	판매시설면적(대지지분)	업무시설면적(대지지분)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27,510㎡	18,325.9096㎡	2,749.9958㎡	6,034.2211㎡	399.8735㎡	46.56%	516.36%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본 아파트의 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매각될 예정임.
- 강동구청과 협의 된 내용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되는 건물 내 또는 사업부지 내에 향후 설계변경을 통해 실내수영장이 입지될 예정임.

IX 단지 여건사항

■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여건 및 단지외부여건

-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주변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 본 사업장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단지내 조합분양+일반분양+임대+보류지 등이 혼합 배치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전 확인바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구간에 조경석 또는 옹벽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높이, 옹벽디자인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향후 지적 측량결과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기부채납 하는 도로 및 녹지 등의 위치 및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 건축물의 재건축, 재개발 등에 따라 각 동 및 층별 일조권 및 조망권, 환경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남측에서 동측으로 20m 도로, 서측으로 15m도로, 북측으로 15m 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차량에 의한 소음,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단지 서측으로 천호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 단지 북서측으로 천호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신축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공사에 의한 소음, 진동, 먼지,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조망권, 일조권등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본 단지 서측으로 2001아울렛이 기 시공되어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의하여 교통정체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본 단지 남서측으로 천호역한강푸르지오시티가 기 시공되어 있으며 이로인하여 일부 세대는 조망권 및 일조권등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본 단지 남측 20m 도로건너 천호동 로데오거리 및 다수의 상가가 밀집하여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및 진동 먼지, 교통정체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본 단지 남측으로 교차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교통장애 및 먼지 차량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북동측으로 다수의 상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미관 저하 및 소음, 먼지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본단지 남서측 약 300m 지점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대형 쇼핑몰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 교통정체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본 단지 남서측 약 400m 지점에 지하철 5호선, 8호선 천호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위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이용객에 의하여 소음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지하를 통하여 운행하는 지하철의 영향으로 소음, 진동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함.
- 본 단지 서측으로 산발적으로 유해시설(유곽)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본 단지 내 북측으로 공공청사, 소공원(주차장)이 예정되어 있으며 향후 시설 완공 후 이용객들에 의한 소음 및 진동 교통장애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단지 주변 공원계획 및 녹지계획 등은 관련기관의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단지 남측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버스의 정차 및 출발에 의한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당 사업과 무관한 내용이므로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함.
- 사업부지 현장 및 주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주변여건, 주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함.

■ 학교 및 어린이집 관련 유의사항

- 단지 내 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당 사업지 입주민의 초등학생은 근거리 배정에 의해 천일초에 배치예정 , 중학생은 강동 송파2학군 13개소 배치예정이나 입주시 변경될수 있음.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강동 송파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단지내부여건**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장은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판매시설등이 혼재하는 주상복합단지임. - 일부 주동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이 혼재하며, 공동주택 중 일부세대는 임대형으로 계획됨. (단지 판매시설의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 업종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저층부 세대는 판매시설과 인접하여 소음 및 진동 악취등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바닥 난방의 효율이 덜어 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일반분양시설인 판매시설 및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아파트)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대지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의 관리주체는 상이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 북측에 공공청사 부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차후 공사진행으로 인한 소음 및 먼지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청사 완공후 시설 이용객에 의한 소음 교통장애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함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외부의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추후 인허가 과정 및 도시의 트렌드 변화, 색채의 유형변화 등에 의해 변경되어질 수 있으니 변경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야간 경관조명에 의해 고층세대는 눈부심 및 수면장애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모형 등을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옥외 계단 및 외부용 엘리베이터의 마감재, 형태, 크기 및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음.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상 및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아파트 저층부 마감은 당사 특화 계획에 따라서 층별, 위치별 시공부위에 따라 석재 또는 석재뿜칠, 수성페인트가 혼용되어 시공되오니 청약 전 모형 또는 CG 등을 확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상3층 옥상정원(판매시설 상부)은 입주자 전용공간이 아닌, 일반 방문자 및 판매시설 등의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된 공용공간이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옥상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옥상구조물(PH 지붕구조물 포함)은 본 공사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고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예정임.(태양광설비의 위치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되며, 냉방은 거실, 안방에 계약자 본인이 에어컨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냉매배관이 설치됨.
- 전기 및 통신맨홀 등의 인입위치는 KEPCO(구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가스계량기 및 세대 가스배관은 실내에 설치 될 예정이며 원격검침 설치시, 검침 데이터를 도시가스사에 제공 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주차장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인허가 과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팬룸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등에 의하여 불쾌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시설물(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D.A, 자전거 보관소, 탑라이트, 썬큰 등)은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D.A가 설치되는 인근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방범상 취약 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D.A위치는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부대시설(공용홀 포함)의 마감 및 시설의 경우 견본주택과 홍보자료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실제 설치되는 수량과 사양 및 기자재의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및 추가요구를 할 수 없음.
- 모형 및 공급단지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 블록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서비스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는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의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색상 및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함.
- 주거동 옥상은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건축심의) 권고에 따라 본 공사 시 그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함.

- 조경 식재 및 시설물, 주변 인접대지와 레벨차이가 있는 부분은 추후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조경 시설물변경에 따른 선형이나 포장 및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조경 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등)이 노출형 또는 벽면형으로 시공되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한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근린공원,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주 및 주차장 진입 상부 구조물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로 연결되는 보행자 출입로 및 1층 아파트 현관은 주변 대지 여건 및 디자인 특화에 따라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보행자도로와 연계된 대지내 전면보도는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일체 할 수 없고,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는 공공의 이용목적으로 입주자 임의로 휀스등을 설치하여 통행을 제한 할 수 없음
- 보행자 출입구의 형태 및 구조는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최상층의 옥상 등은 개별 사적 소유물이 아니므로 1층의 녹지공간과 같이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하고 공공의 목적에 반해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형할 경우 변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은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다양한 평면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교통영향평가 변경에 따른 주출입구 차선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과 동 사이에 마주한 세대는 각 세대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확인 후 진행하여야함
- 각 동의 저층 세대는 산책로, 단지 내외 도로 등에 의하여 생활권과 일조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쓰레기 보관소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아파트와 판매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이 혼합된 주상복합 단지로써 저층부 상가에 입점하는 점포에 따라서 소음 및 진동 악취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객들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1동 후면, 102동 후면에 어린이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후면, 104동 측면에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주변세대는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1동과 102동 사이 1층에 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4동 1층에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3동 우측면에 공개공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1동 102동 정면으로 공개공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1 동 30F 6호라인측에 기계실, 7호라인측에 피난공간이 설치 될 예정이므로 일부 인접세대에서는 기계실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먼지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2 동 30F 6호라인측에 기계실, 7호라인측에 피난공간이 설치 될 예정이므로 일부 인접세대에서는 기계실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먼지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3 동 30F 6호라인측에 기계실, 7호라인측에 피난공간이 설치 될 예정이므로 일부 인접세대에서는 기계실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먼지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4 동 30F 공동주택 라인 4호라인측에 피난공간, 5~8호라인측에 기계실이 설치될 될 예정이므로 일부 인접세대에서는 기계실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먼지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4 동 30F 오피스텔 라인 1~6호라인측에 기계실, 7~8호라인측에 피난공간이 설치될 될 예정이므로 일부 인접세대에서는 기계실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먼지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4 동 40F 오피스텔 라인 고가수조실, 지붕층 공동주택 라인 고가수조실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먼지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1~104 동 지붕층 소방관련 급기/배기팬 설치될 예정이므로 일부 세대에서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시 소음 및 진동 먼지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103동 지하2, 3층 인근에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이 설치됨에 따라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지하1층 인근에 음식물쓰레기 배출관련 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이송차량 출입 및 배출시에 소음,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옥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입상배기관의 배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옥상으로 음식물쓰레기 탈취배기관의 배기구가 설치됨에 따라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지하 1층, 지상 1층 계단실 근처에 판매시설용 대용량 음식물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됨에 따라 냄새, 해충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지상3층~지상36층, 102동 지상3층~지상40층, 103동 지상3층~지상36층, 104동 지상6층~지상40층 엘리베이터 홀에 음식물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됨에 따라 엘리베이터 홀 및 복도에 소음,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각층 투입구, 기계실 위치, 배출관련 시설 위치는 사용성 및 인허가진행 과정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등의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과 상가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북측과 서측에 위치한 단지 출입구 및 주차장램프에 인접한 101동, 102동은 단지 출입 및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의해 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음.
- 단지 출입구는 북측 및 서측 각 1개소가 설치되어 복합용도시설의 일반 이용자 및 차량이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비주거시설(업무시설, 판매시설)용 차량은 지하2층, 주거시설(공동주택)용 차량은 지하3~5층을 각각 이용하며, 단지 북측 공원, 공공청사 부지 하부의 지하 공영주차장과 복합건축물 지하 주차장이 연계되는 보행자 연결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지상부의 판매시설의 보행자의 단지내 접근은 다방면으로 이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동선혼재 및 불편이 야기될 수 있으나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주상복합단지의 특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본 단지 공동주택에서 판매시설로 직접 연결되는 통로는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차후 설계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판매시설 및 오피스텔 주차장은 공동주택 출입구와 공용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차량 정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민 임의로 통제 및 점유 소유권주장 등을 할 수 없음.
- 판매시설은 실외기실이 따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3층 옥상정원에는 다수의 실외기가 노출 형태로 설치 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먼지, 발열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함
- 판매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판매시설은 단지 여건에 따라 입면이 변경 될 수 있음.
- 차후 기계설비 설계 결과에 따라 판매시설용 냉각탑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하여 악취 및 연무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판매시설용 탈취기가 판매시설 옥상 각 동 정면,측면에 분산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인하여 악취 및 저층부세대의 조망권등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함 (차후 기계설비 설계결과에 따라 위치는 조정 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판매시설 옥상에 급배기휀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인하여 열기, 소음, 먼지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아파트 및 판매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외관 디자인(입면, 벽체마감 등) 및 외부 색채(형태, 패턴, 재질 등), 간판위치, 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장 및 협의 결과에 따라 실제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104동 4층에 휘트니스센터 및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환기 및 채광에 불리 할 수 있으며, 휘트니스센터, GX룸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 부속시설물의 에어컨실외기, 배기휀,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엘리베이터 등으로 인하여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출입문 크기,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의 실외기는 커뮤니티 인근 지상층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상부에 지붕이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 및 소음 및 차량불빛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동선 및 지하층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총 지하 4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2층은 판매시설 및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3층, 지하4층, 지하5층은 공동주택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이 실내외온도차가 클경우 연돌효과에 의해 출입문개폐의 어려움, 엘리베이터 작동오류,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주상복합 건물이며 인동거리의 제한이 없으므로 세대간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 이삿짐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함.

- 보행자도로와 연계된 대지내 전면보도는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일체 할 수 없고,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출입구와 연결된 출입 램프 높이는 약 2.3m이며 탑차, 택배차, 대형화물차 및 사다리차 등의 진입이 불가능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높이가 변동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지하 2층~5층 주차장에서 약 2.3m 로 부위별로 상이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차로 높이는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며 탑차 및 대형화물차의 통행이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 고효율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될 수 있음.
- 지하 제연휀룸의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에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 및 개소는 달라 질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계단은 본공사시 위치가 변경되어 시공 되어 질 수 있음.
- 공청안테나 및 위성안테나 같은 통신 설비는 104동 옥상에 설치 될 예정이며, 차후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통신설비의 설치위치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위치 변경 및 설치개소가 변경 될 수 있음)
-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비는 지하주차장 지하1,3,5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동통신설비 안테나는 지하5층~지상1층에 설치 될 예정이므로 차후 소음 및 진동 또는 전파의 교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단, 향후 본 공사 진행시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위치 변경 및 설치개소가 증감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벽부 및 옥탑층에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동의 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 (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함.
- 현재 적용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 적용 예정 임.
- 태양광 집광판은 101,102,103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임.(태양광 집광판 설치시 동배치, 방위각, 일조량, 그늘, 여부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설치예정이며 효율에 따라 설치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내 정압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장 4개소(각 동별 1개소) 및 재활용 폐기물 보관소 1개소(104동 1층)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장소 및 크기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각 타입별 발코니 설치 위치 및 유형구분

본 단지는 주동 입면 디자인 결과에 따라 각 동별 부위별로 발코니 모양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

구분	101동	102동	103동	비고
84A	◎ 3~6층, 14층, 30~35층 → 84A1 ◎ 7~13층, 15~29층 → 84A2	◎ 3~6층,14층,30층,38~39층 → 84A1 ◎ 7~13층,15~29층,31~37층 → 84A2	◎ 3~6층,14층,30~35층 → 84A1 ◎ 7~13층,15~29층 → 84A2	
84B	◎ 15~29층 → 거실 외부발코니 옹벽200mm 얇아짐 ◎ 7~13층,15~29층 → 침실3 발코니200mm 늘어남	◎ 6~14층,30~38층 → 거실 외부발코니 옹벽 200mm 얇아짐 ◎ 7~13층,15~29층,31~37층 → 침실3 발코니 200mm 늘어남	◎ 7~13층, 30~32층 → 거실 외부발코니 옹벽 200mm 얇아짐 ◎ 7~13층, 15~29층 → 침실3 발코니200mm 늘어남	
98		◎ 7~13층, 15~29층, 31~37층 → 거실 외부발코니 옹벽 200mm 얇아짐		
102	◎ 3~6층,14~20층,30~35층 → 발코니 침실2설치 ◎ 7~13층,21~29층 → 발코니 침실3설치	◎ 3~14층,30~39층 → 발코니 침실2 설치 ◎ 15~29층 → 발코니 침실3 설치		
114	◎ 7~13층,21~29층 → 침실1측 발코니 200mm 늘어남 → 거실 외부발코니 옹벽 200mm 얇아짐			

- 84A1 TYPE – 침실2측 발코니, 실외기실 설치 (침실3측 미설치)
- 84A2 TYPE – 침실3측 실외기실 설치 (침실2측 미설치)

■ 테라스 관련 유의사항

- 본 사업과 관련된 공급안내문 등 홍보물 상의 테라스(옥외공간)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하며, 해당 공간에 설치된 소품 및 식재 등은 연출용으로 실제 제공되지 않음
- 제공품목 : 테라스, 옥외공간 난간대
- 미제공품목 : 각종 디스플레이 소품
- 테라스 바닥은 노출우레탄 마감 예정이며 데크등의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음
- 테라스에는 우, 오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되며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테라스 진입을 위해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테라스 외곽에 난간이 설치됨
- 테라스 세대간 간벽은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시 인도하는 테라스 건축 기본마감 (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외에 입주자가 추가적인 시공 (데크, 타일마감 등)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음
- 테라스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설계 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 시 인접세대 및 하부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의 테라스로 표기된 부분은 설계상 다른 세대상부에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조경, 파고라, 놀이기구 등 가설시설물 설치 시 활하중의 제약이 있으므로 구조물 등의 설치 시 사전에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야 함
- 동 호별로 테라스 형태 및 면적이 상이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동 별 배치에 따라 테라스 면적이 가감 될 수 있음
- 본 주택은 건축법상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테라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며, 테라스는 각층 해당세대가 독립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고 단순 점유하는 공간이므로 계약 전 이에 대해 관련 도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 테라스 및 최상층의 옥상은 공용공간으로서 사적 소유물은 아니나 개별세대를 거쳐 진입해야 하고 해당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방범의 이유로 공공 관리 목적이 아닌 사적사유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람. 사적인 이유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무단주거침입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단, 공공의 관리목적으로 관리자가 출입할 수 있으니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 시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사적재산권 행사는 불가함
- 본인이 본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위항 내용을 매매계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향후 제3자가 분양 시 다른 구분 소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각 층 테라스에서 외부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유아, 노약자 등 주의가 필요한 입주자의 난간 접근을 차단하는 등 추락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테라스 진출입 시 실내외부의 단 차이 및 빗물침투방지를 위한 창문의 턱에 발이 걸리거나 부주의에 의한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람
- 각 층 테라스는 외부에 노출된 공간으로 인접한 세대 등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테라스는 본 공사시 세부 마감 및 디테일 개선에 따라 형태 및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배치계획 상 동일 타입이더라도 테라스의 위치, 형태 또는 크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IOT 관련 유의사항

- LGU+의 IoT서비스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임.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 등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춤.[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내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 환기, 난방제어 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GU+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내 무선인터넷(Wi-FiAP)를 설치하여야 하고(통신사무관),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U+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U+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과 영상의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X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1. 당사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하여야 함(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
2.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3. 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Mock up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함
4. 본 아파트는 발코니 비확장을 기본으로 공급하며, 발코니 확장형은 별도계약품목 (유상옵션)이며 발코니 확장면적은 주택형별로 상이함
5. 본 아파트는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달로그와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음
6. 본 아파트의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50mm로 시공될 예정이며 천정 디자인 결과에따라 부위별 상이 할 수 있음
7. 본 아파트의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침실 내부로 물넘침 방지를 위해 바닥 구배시공을 하며, 준공 도면 및 견본주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이 발생할 수 있음)
8.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 세대가 기본형(비확장) 세대인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등이 발생할 수 있음
9.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음
10.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외부 창호는 미설치됨
11.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①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②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③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④ 주방가구 하부 및 붙박이장 하부는 별도 마감재(**마루**)가 시공되지 않음
12. 분양 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13.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4.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15. 본 공사 시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드레인과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16. 세대내 벽체는 기둥, 옹벽, 건식고정벽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 있음
17.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8.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19.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됨
20. 본 공사 시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한 색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음
21.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22.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23.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실외기실 상부에 천장 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24.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25.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온수분배기 하부는 별도의 마감되지 않음)
26.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27.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28. 주방가구 하부장 무늬 패턴은 본 공사시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29. 주방상판은 제품 특성상 조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나눔부위가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음
30.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음
31. 세대내부 포인트 타일 요철로 인해 줄눈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32. 주방 기본형과 확장형 레이아웃은 서로 상이하며, 주방 확장시 바뀌는 부분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셔서 확인바람
33. 기본형 세대의 경우 세대 내 창호 위치 및 크기는 차후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34. 단위세대 창호방향은 차후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35.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36.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7. 가스배관이 주방상부장으로 지나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 될 수 있음
38.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음
39. 아파트 바닥 난방코일 및 마루마감재는 현재 가구배치가 되어져 있는 곳을 제외하여 설치되어 있음
40. 본 공사 시,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
41.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42. 소방법에 의해 세대에 완강기(3~10층)가 설치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43.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44.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45. 세탁실 천정에 설치되는 환기설비에 따라 세탁실 천정(또는 가림판)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탁실 천정의 높이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
46.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47. 세탁실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48. 세탁실,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결로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음
49.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50.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51.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52.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되며, 제품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53.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욕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54.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55.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됨
56. 견본주택 미건립세대 25,47A,47B,50타입 마감재는 견본주택 건립 59타입과 동일한 마감재로 미건립세대 84B,98타입은 견본주택 건립 84A와 동일한 마감재로 미건립세대 114,136P는 견본주택 건립 102와 동일한 마감재로 시공됨
57. 겨울 내내 닫아놓았던 갤러리창(루바)을 열지 않고 여름철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 실외기실이 통풍이 되지 않아 열로 인하여 실외기실이 과열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갤러리창(루바)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해야함.
58.본 단지는 조합분양세대와 일반분양세대가 혼재되어 있으며 조합분양세대의 경우 일반분양세대와 일부 마감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 및 추가 요구사항을 요청 할 수 없음(일반분양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준으로 시공됨)

■ 세대/규격
1.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제공/전시품목
1.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과 무관함
4.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텐,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시 시공에서 제외
5.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유상옵션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여야 함

■ 견본주택 고지사항
1.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의 성능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2.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음
3.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4.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음
5.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한 견본주택 전용이며, 본 시공과 무관함
7.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9.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10.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됨.

■ 커뮤니티 시설
1.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2.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음
4.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5.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음
6. 어린이집, 경로당은 지상1층에, 관리사무소 및 휘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주민공동시설은 104동에 설치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1개소, 경비실2개소, 경로당1개소, 어린이집1개소, 어린이놀이터2개소, 휘트니스센터1개소, 작은도서관1개소 등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용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적용)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고기밀 창호	적용	- 외기직접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이상 적용, 발코니 내측에 설치되어 외기에 간접으로 면할수 있는 부위는 제외
고효율 기자재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단열재의 설치	적용	- 세대 내의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설치함.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 세대 내에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다만,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 단위세대,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를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 단위세대내 수전류(양변기, 세면기, 샤워기, 욕조, 주방수전)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 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의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태양광 시스템	적용	-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공용 전기에 사용예정. - 태양광 집광판은 101,102,103동에 설치될 예정이며, 차후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44.10KW 예정)
지열 시스템	적용	- 부대시설 적용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 분	등급	AA등급		비 고
	기준	설치항목(1)	설치항목(2)	
항 목	1	배선	침입감지기	
	2	예비배관	차량통제기	
	3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전자경비시스템	
	4	통신배관실(TPS)	주방TV	
	5	단지서버실	일괄소등제어	
	6	폐쇄회로TV장비	디지털도어록	
	7	가스밸브 제어기	엘리베이터호출연동제어	
	8	조명 제어기	현관도어카메라	
	9	난방 제어기	욕실폰	
	10	현관방범 감지기		
	11	주동현관 통제기		
	12	원격검침 전송장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약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5612020-101-0005300호	380,679,600,000원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자(수분양자)는 분양수입금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개설한 결제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권 양도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 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분양대금채권 및 임대수입금채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 및「주택법」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장수명 주택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최우수(그린1등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1등급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 금액

(단위 : 원,/ VAT별도)

구분	건축/토목/기계	전기감리	소방/정보통신감리
회사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예다종합설계감리사무소	상지이앤씨㈜
금액	₩ 5,121,080,000 ≠	₩ 1,201,610,318 ≠	₩ 1,615,000,000 ≠

■ 사업주체, 자금관리대리사무사 및 시공회사, 분양대행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호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SH)	중흥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일기업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200, 302호(천호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신안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8번길 14-13,5층(대치동)
법인등록번호	244171-00011408	111171-007324	205511-0004135	110111-4679746

■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주택홍보관 위치	홈페이지
1544-6177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23-200번지 일원**	**www.gd-sclass.co.kr**

■ 현장위치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23-200번지 일원

※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